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의 “비상근 예비군”은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, “비상근”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·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‘상비(常備)예비군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예비군법」이 개정(법률 제21770호, 2026. 6. 9. 공포, 2026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현역 가용병력 부족에 따라 상비예비군을 지속 확대하여 전시에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비예비군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“상비예비군의 정원” 조항을 삭제하고 매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의 제목 “(비상근 예비군 제도)”를 “(상비예비군 제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항, 제6항, 제7항, 제8항 및 제9항 중 “비상근 예비군”을 각각 “상비예비군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”을 “고려하여 매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5조의2 제목과 같은 조 내용 중 “비상근 예비군”을 각각 “상비예비군”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2026. 12. 10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비상근 예비군 제도)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(이하 이 조에서 “비상근 예비군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	제5조의2(상비예비군 제도) ① - ----- ----- ----- “상비 예비군”----- -----.
1. 단기 비상근예비군: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 예비군	1. 단기 상비예비군: ----- ----- 상비예비군
2. 장기 비상근예비군: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	2. 장기 상비예비군: ----- ----- 상비예비군
② 비상근예비군은 「병역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.	② 상비예비군은 ----- ----- -----.
③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 환경, 군 구조 개편 정도,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	③ 상비예비군의 ----- ----- ----- ----- 고려하여 매년 ----- -----

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.

1. 단기 비상근예비군: 5,000명 이하

2. 장기 비상근예비군: 700명 이하

④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을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.

⑤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.

⑥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「병역법」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영부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입영부대장”이라 한다)이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.

⑦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④ ----- 상비예비군 -----

-----.

⑤ ----- 상비예비군 -----

-----.

⑥ 상비예비군-----

-----.

⑦ ----- 상

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, 직무수행능력의 부족,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 등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.	비예비군----- ----- -----
⑧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이 「병역법」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.	상비예비군----- ----- -----.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근예비군의 세부 소집 분야,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	⑧ ----- 상비예비군----- ----- -----.
	⑨ ----- 상비예비군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07